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

1. 보고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(통합계정) 특별회계별 예탁금 조정 및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상환 변경 반영

○ 운용규모 : 1,949,596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변동 없음)

〈 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: 백만원)

〈 수입계획 〉			
구 분	3차변경 (A)	4차변경 (B)	증 감 (B-A)
계	1,949,596	1,949,596	-
용자금 원금회수	15,250	15,250	-
예수금	1,702,814	1,702,814	-
예탁금 원금회수	23,970	23,970	-
예치금회수	144,741	144,741	-
이자수입	62,822	62,822	-

〈 지출계획 〉				
구 분	3차변경 (A)	4차변경 (B)	증 감 (B-A)	
계	1,949,596	1,949,596	-	
재무 활동	소 계	1,949,589	1,949,589	-
	예수금 원금상환	158,473	158,473	-
	예수금 이자상환	71,282	64,939	△6,343
	예탁금	1,614,200	1,619,200	5,000
	예치금	105,635	106,978	1,343
행정 운영 경비	소 계	7	7	-
	기본경비	7	7	-

○ 수입계획 변경

- 변경 내역 없음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수금이자상환 : 71,282백만원 → 64,939백만원 (△6,343백만원)

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7,705 → 21,362백만원(△6,343)

- 예탁금 : 1,614,200백만원 → 1,619,200백만원 (증 5,000백만원)

• 교통(특) 교통관리계정 613,900 → 593,900백만원(△20,000)
 • 주택(특) 국민주택계정 187,600 → 177,600백만원(△10,000)
 • 도시철도건설(특) 393,400 → 428,400백만원(35,000)

- 예치금 : 105,635백만원 → 106,978백만원 (증 1,343백만원)

▶ 예수금이자상환 및 예탁금 규모 변동에 따른 예치금 증액

나. (재정안정화계정) 기본경비 조정 및 이에 따른 예치금 변경 반영

○ 운용규모 : 834,041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변동 없음)

<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>

(단위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< 지출계획 >				
구 분	2차 변경 (A)	3차 변경 (B)	증 감 (B-A)	구 분	2차 변경 (A)	3차 변경 (B)	증 감 (D-C)	
계	834,041	834,041	-	계	834,041	834,041	-	
전입금	285,367	285,367	-	효율적 재정 운영	소계	150,000	150,000	-
					출자금	150,000	150,000	-
이자수입	29,501	29,501	-	재무 활동	소계	683,731	683,706	△25
					차입금 원금상환	419,746	419,746	-
차입금 이자상환	134,970	134,970	-					
예탁금 원금회수	80,000	80,000	-		예치금	129,015	128,990	△25
예치금 회수	439,173	439,173	-	행정 운영 경비	소계	310	335	25 (증 8.1%)
					기본경비	310	335	25 (증 8.1%)

○ 수입계획 변경

— 변경 내역 없음

○ 지출계획 변경

— 기본경비 : 310백만원 → 335백만원 (증 25백만원)

▶ 모집공채 발행 횟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추가 반영

— 예치금 : 129,015백만원 → 128,990백만원 (△25백만원)

▶ 기본경비 변동에 따른 예치금 감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(보고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(보고)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전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※ 작 성 자 :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정채현(☎ 2133-6813)

재정담당관 재정정책팀 이지나(☎ 2133-6866)